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기준을 상세화 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법무부장관(소년보호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법령·제도·정보·조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훈합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주무관 권예지 사무관 연가
의약품안전평 전결2020.7.10.
가과장 김정연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4124 (2020. 7. 1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19 팩스번호 043-719-2700 / yeji24@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